

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

「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하반기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4일

대전광역시

1. 지원규모 : 150억 원(중소기업육성기금) / 국내 및 수출납품

(단위: 억원)

구분	신청대상	상반기 지원규모	지원조건	융자금리
계		150		
구매조건 생산 지원자금	대전시 소재 중소기업(별첨1)	150	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	상 동

2. 지원대상(가, 나 둘다 충족)

- 가.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 「별첨1」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- 나.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,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(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)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

3. 지원 범위

- 가.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
- 나.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(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)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

4. 지원조건 및 한도

- 가. 용자기간 : 2년(2년 거치 일시상환)
- 나. 용자금리 : 분기별 변동금리 / '25년 3분기 기준 2.4%
※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: 시 차감금리 0.93% 적용
- 다. 지원규모 : 업체당 5억원 이내 / 소요자금(원부자재 구매 비용)의 75% 지원
- 라. 추천횟수 : 제한없음(단, 기 용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)
- 마. 대출은행 : 하나, 국민, 신한, 우리, 농협중앙회, 기업, 산업, 전북, 부산, 대구은행 * 관내 지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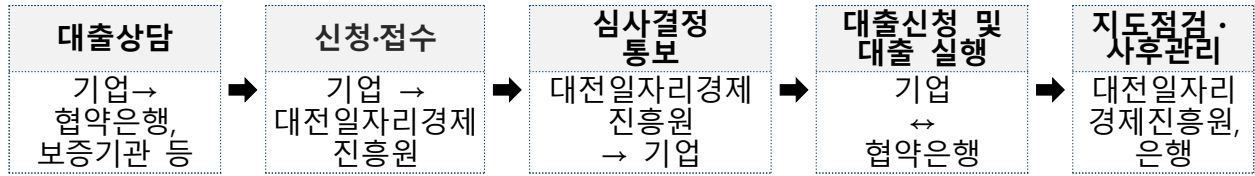
5. 지원 제외업체

- 가. 용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
- 나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휴·폐업 중인 업체
- 다. '금융기관여신운용세척'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- 라.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이상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업체
- 마.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: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(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) 기 수혜기업
- 바.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(창경,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
- 사.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※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- 아.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
- 자.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(뒷장 참조)
- 차. 재무제표 상, 부채비율((부채총계/자본총계)*100)이 마이너스(자본잠식)인 업체
- 카. 신청일 현재 지방세,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(완납 후 신청 가능)

6. 신청 및 접수

- 가. 접수기간 : 2025. 7. 4. ~ 12. 31.
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- 나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『대전비즈』)
- 『대전비즈』 접속(<http://www.djbea.or.kr/biz>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 공고 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- 다. 신청 구비서류: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[별첨2]
- 라. 용자대상자 결정 : 적격 평가 후 지원 결정 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: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

마. 지원절차



바. 기타사항

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
7. 사후관리

- 가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

<p>(향후 1년간 추천 제약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▶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▶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<p>(향후 3년간 추천 제약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▶ 신청·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(특수관계인 간 거래·계약, 상호·대표자·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) ▶ 기타 부당 사용 ▶ 용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8. 유의사항

- 가.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용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용자금 연체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)
- 나.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(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)
- ※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
 - ※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,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
- 다. 사업장이 휴업·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 중단
- 라.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

9. 상담 및 문의
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(☎ 042-380-3081, 3021, 3000)

별첨 1 **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업종**

구 분	세부사항 및 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	비 고
제조업	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공장설립 인·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③ 『특허법』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④ 『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의한 우수 신제품(NEP) 인증 기업	전업율 30% 이상
지식산업	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(582) ② 자연과학연구개발업(7011)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(7212)	전업율 50% 이상
영상산업	○ 영상물 제작 분야	
중소기업 협동조합	○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	

별첨 2 **신청 구비서류**

구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 서류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	
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※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- 부가세신고서(도장날인) 제출
	전년도 재무제표 (홈텍스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작성분)	※ 24년도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신고서(도장날인) - 부가가치세신고서: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
	납품(국내/수출)계약서	※ 계약서 도장 필수 ※ 2025년 5월 이후 납품계약 건
	구매견적서(계약서)	※ 견적서 도장 필수 - 신청일기준 제출된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
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
	4대보험 가입자 명부	※ 정부24 → 민원신청 →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
	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	※ 첨부서식 활용
법인 주주명부 (법인의 경우 제출)	※ 국세청 홈텍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	
추가 자료	추정재무제표(회계사 & 세무사)	대상: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 용 ※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

※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.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 업 계 획 서

※ 아래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개요

- 회사소개 :

- 생산품목 :

- 자금소요시기 :

○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(동 자금은 원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)

구분	소요 금액
재 료 비	000,000백만원
기 타	000,000백만원
계	0백만원

○ 융자금 상환계획

○ 기 타

※ 작성요령 : 융자금대출금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(일시상환)을 간략히 기록

【【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】】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-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(접수·심사·추천) 및 사후관리(이차보전지원, 사후관리, 변경사항 관리 등)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,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
-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
업체정보 및 관련사항	회사명, 사업자번호, 대표자(성명, 휴대전화, 생년월일, 성별), 법인번호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휴대전화, 주소, 담당자(성명·부서·직책·휴대전화·이메일)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
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	재무제표, 공장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관리대장,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
지원현황	지원금액 및 지원내용,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,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

-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(대전시, 시의회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), 지원기관(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),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

□ 동의 효력기간

-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
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장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 기업명 ○○○
 대표자 ○○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납품 계약 명세서

(단위 : 원)

계약일	납품기한 (계약서상 명시 필수)	매출처	계약내용	계약금액 (VAT 제외)	비고
합 계					

원부자재 구매내역 명세서

(단위 : 원)

건적일	매입처	원부자재 구매내용	구매금액 (VAT 제외)	비고
합 계				